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3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0조제2항은 현행을 유지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제1항제2호 중 “소속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임원) ① ---------- ----------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임원) ① ---------- ---------- ---------- ---------- ---------- ---------- ---------- ----.
<신 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3년 이상 재직한	2. ----------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 설>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3. (개정안과 같음)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② 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에 따라 공단에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기금이사의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의 규정에 따른다. 3.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7

발의연월일 : 2024. 8. 20.

발 의 자 : 이수진・조인철・이기헌 황정아・민병덕・최기상 추미애・백승아・전종덕 서영교・이용우・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안 제3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30조제2항은 현행을 유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임원) ① ---------- ---------- -----10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신 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신 설>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

	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신 설>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